# 2024학년도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유치원 계획

2024. 3.



# 목치 |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유치원계획

Ι.	유치원 안전 계획 개요————	- 1
	1. 유치원 현황	1
	2. 유치원 안전 조직	ફ
	3.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8
Π.	유치원 안전 현황 ————	11
	1. 유치원 안전 현황	. 11
	2. 유치원 안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 12
Ш.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	15
	1. 유아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계획	. 15
	2.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계획	. 20
	3. 안전한 교육 활동 여건 조성	• 41
IV.	유치원 안전사고 피해 회복	45
	1.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 배상 책임 공제급여 청구 절차	
	3. 유치원 안전사고 시 유아 심리지원	
	_	
_	<b>ㄹ</b>	10

PAR

# 유치원 안전 계획 개요



# 1 유치원 현황

# 의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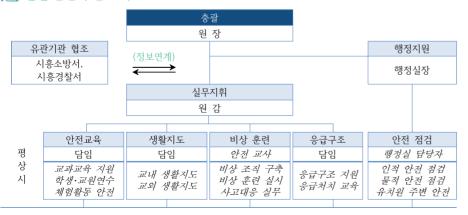
유치원명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경기!	29	
전 화	070) 7097-0658	홈페이지	http://www.gold.es.kr/
원 장	000	원 감	000

# 유아 및 교직원 현황(2024.3. 기준)

학생	은방울반		초롱	꽃반	합계	
(명)	5		į	5	10	
교직원	교원	방	과후 전담사	교육자원봉사	사자	합계
(명)	2		1	1		4

# 2 유치원 안전 조직

# ₽ 안전 관련 추진 조직도



# € 안전 관련 업무분장

• 유치원 안전 업무는 각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업무이므로 교직원 간 기밀한 협조체계 유지

담당	부서	관련 업무			
	교무부	∘(교무부 주관 행사 시) 행사 안전 ∘(현장학습 연령별 담당자) 현장학습 안전			
7 [ ]	연구부	(연구부 주관 행사 시) 행사 안전			
교무실	안전부	∘ 학교 안전 계획수립 ∘ 유아 안전교육 ∘ 교직원 안전 연수	∘ 재난대피 훈련 ∘ 안전 점검의 날 체크리스트(교실 부분) 작성		
	보건부	•성교육, 감염병, 미세먼지 •응급처치	· 보건실 관리		
행정실		◦ 안전 점검의 날 체크리스트 수합 기안	• 유치원 시설관리         • CCTV 관리         • 소방 관련 업무		

# ☑ 식중독 교내대책반의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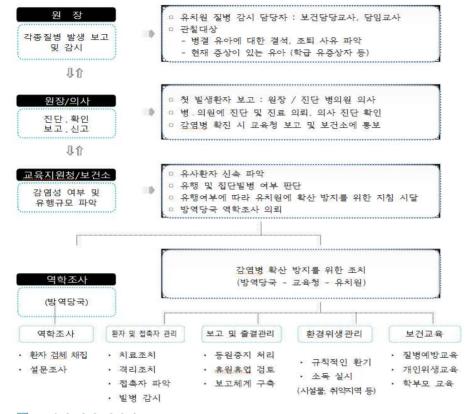


# ❷ 응급구조체계 조직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사고의 경우, 시의적절한 응급구조는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관건임



# ☞ 감염병 대응 체계



# № 교직원 비상 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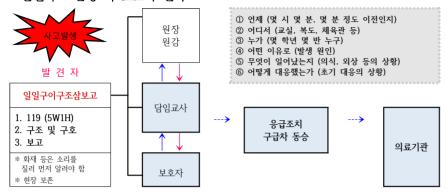
- 교직원 비상 연락망은 자체 보관하며, 교직원 비상 연락망 변경 시 수정하여 보관

# 3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 ₽ 안전사고 관리지침



### \* 안전사고 발생 시 보호자 연락



- 보호자 연락 시 주의사항
  - \*\* "보호자 연락"은 사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개인의 추측이 섞인 표현과 감상은 삼가야 한다. 보호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위급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긴급연락처 파악
  - 사고 발생 상황과 상태에 대해 상세히 전달한다.
  - 병원명과 주소지, 전화번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묻는다.
  - 사고를 당한 유아의 인도장소, 시간에 대해 연락을 취한다.

# ● 안전사고 보고체계 (유치원 →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

○ (동시 보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을 위해 사고 현장에서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동시 보고



- (보고 방법) 현장 사고 상황 파악 후 교육부 안전 대표 메일\*을 통하여 사고 보고(긴급한 사안일 경우 즉시 보고)
- \* moe119@korea.kr 메일로 사고 보고 시 담당자 개인 메일로 자동 전송
- (보고기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 피해가 심대한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 병원 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발생)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 관련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에서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및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거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유치원 안전 현황



# 1 유치원 안전 현황

# ₽ 유치원 안전 계획 추진내용

4대 분야	추진 과제 및 추진내용	비고
	1-1. 재난·안전 위기 대응 체계 구축 가. 재난 상황모니터링 및 정보공유체제 개선	
유치원 안전사고	1-2. 유치원 안전 관련 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가.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대책 관련 조직 일원화 나. 지역사회와 안전 협력체계 구축	
예방체제 구축	1-3. 유치원과 유치원 주변 안전 시스템 구축 가. 유치원 안전 계획의 수립과 시행 * 매월 3월 말까지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년도 계획 제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7조) 나. 유치원 안전 위험성 진단실시	
유아 참여형	2-1. 현장 중심 유아 안전교육 강화 가. 화재 및 지진대피 훈련 및 안전교육 강화 나.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다. 생활 속 안전 위험 분야 예방 교육 강화 ① 미세먼지 및 폭염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②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③ 연간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 ④ 자외선, 대기질(황사,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안전교육 및 교직원 안전교육 내실화	2-2. 체험 위주 안전교육 강화 가. 맞춤형 재난대응안전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나. 원내 화재대피 훈련 및 지진대피 훈련 운영 다. 7대 안전교육 기자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라.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2-3. 유치원 구성원 안전 역량 강화 가. 모든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운영 나.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강화 다.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교육 실시	
안전한 교 <del>육활동</del> 여건 조성	3-1. 교육시설의 안전성 강화 가. 교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 점검 실시 ①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 점검 실시 나. 안전 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3-2 교육활동 안전 강화 및 지원 여건 마련 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제도적 정착 나. 유아 교통안전사고 예방 강화 다. 유치원 급식 안전관리 강화 라. 방과후교실 안전관리 강화 마.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 심리적 치료체계 강화	
안전한 유치원 풍토조성	4-1. 유치원 안전 문화의 확산 가. 나침반 5분 안전교육으로 안전교육 활성화 나. '유치원 안전 주간' 운영으로 안전 문화 조성 - 안전 주간 운영 3월	
	4-2. 안전사고 평가와 환류 체계구축 가. 안전사고 처리 후 평가활동 강화	

# 2 유치원 안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 ₽ 안전약자(요보호유아) 현황 및 관리방안

- 신학기 건강조사 등을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유아를 파악하고, 해당 유아가 있을 시 지원계획을 수립. 이를 통해 개별면담과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안전한 유치원 생활을 돕고, 응급상황 예방과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필요
- 2023학년도 기준 현 유치원은 관리가 필요한 안전약자가 발생하지 않았음.
  - \* 요보호유아: 소아당뇨 및 희귀질환 유아

# 전년도 유치원 안전교육 추진실적

#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2023년)

구분		교직원 수(명)		안전 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연도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 /A)×100
2023	2	2	4	2	2	4	100%

- ※ 3년마다 모든 교직원이 안전교육 직무연수(15시간 이상) 이수-
- ※ 교원은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시간제 강사를 말함



# 안전교육 및 예방 활동 계획



# 1 유아와 교직원 안전교육 시행계획

# ₽ 연간 나.침.반 안전교육 및 7대 안전교육 연간 계획

구분	세부 내용 및 수업 기준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생활안전교육	·시설 및 제품안전, 실내·실외활동, 신체활동·여가활동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13시간)					
	교통안전교육	・보행자・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대중교통 안전	학기당 3회 이상 (연간 10시간)					
7대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자살예방,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아동학대 예방, 가정폭력 예방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8시간)					
안전교육 표준안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흡연·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인터넷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10시간)					
	재난안전교육	·화재, 폭발·붕괴, 테러사고,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대설, 한파, 낙뢰 등)	학기당 2회 이상 (연간 6시간)					
	직업안전교육	-직업안전의식, 산업재해, 직업병, 직업안전 예방 및 관리(정리정돈, 보호구 착용 등)	학기당 1회 이상 (연간 2시간)					
	응급처치교육	·응급처치 이해와 중요성,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상황별 응급처치(기도폐쇄, 지혈, 상처처치, 염좌, 골절, 화상 등)	학기당 1회 이상 (연간 2시간)					

구분	세부 내용 및 수업 기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안전교 육	실	<b>구분</b> 아동학대 ( 의 예방과 남용 예방 등 바비 안전 통안전		리	세부 내용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구분				안전교	육 영역				운영시간
	7대 안전교육		전 교육 시간) 실종 유괴 (4시간)	교통 안전 교육 (10시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8시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10시간)	재난 안전 교육 (6시간)	직업 안전 교육 (2시간)	응급 처치 교육 (2시간)	51차시
7대 안전교육과 아동안전교육 공통 운영 가능시간	아동 안전교육		실종 · 유괴 예방 방지 교육 (10시간)	교통 안전 교육 (10시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8시간)	감염병 및 약물오용 · 남용 등 보건위생 관리교육	재난 안전 교육 <sup>(6시간)</sup>			44시간
	기관 필수 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1회 이상)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 <sup>(연 1회 이상)</sup>			보건 교육 (수시)	
	공통시간	9시간	10시간	10시간	8시간	10시간	6시간	2시간	2시간	57시간
아동 학대 예방 관련	가동 하대 이방 이방 - 교사 및 강사 대상: 아동학대예방 연수 / 기급 지원 신고인무자 교육									

- 9 -

학기	연번	활동명	안전영역(횟수)
	1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해요	생활안전①
	2	급식 안전 규칙	생활안전②
	3	인도로 안전하게 걸어요	교통안전①
	4	친구가 괴롭히거나 속상하게 한다면	폭력예방.신변안전①
	5	신호등이 말해요(안전실천연합회)	교통안전②
	6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알아 보아요(미세먼지 계기교육)	재난안전①
	7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실종유괴예방)	생활안전③
	8	끼임 사고를 조심해요	생활안전④
	9	내 몸을 위한 약! 바르게 먹을 수 있어요	약물.사이버 중독 예방①
	10	목에 걸릴 수 있는 물건이나 음식	응급처치①
	11	횡단보도로 건너요	교통안전③
	12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실종유괴예방)	생활안전⑤
	13	성범죄예방 안전교육(안전실천연합회)	폭력예방.신변안전②
	14	스마트기기는 우리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약물.사이버중독 예방②
	15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알아 보아요(실종유괴예방)	생활안전⑥
	16	놀이터 안전	생활안전⑦
1	17	교통안전 자동차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교통안전⑧
학	18	담배는 나빠요	약물.사이버중독 예방③
기	19	인터넷 예절을 알아보아요 — 올바른 스마트폰사용 캠페인	약물.사이버중독 예방④
	20	자전거를 타기 위해 준비해요	교통안전⑤
	21	불이야! 불이야! - <b>화재대피훈련</b> (초등합동훈련)	재난안전②
	22	길을 잃어버렸어요(실종유괴예방)	생활안전⑧
	23	환풍구와 맨홀을 조심해요	생활안전⑨
	24	어린이 유괴 예방 및 대처법(실종유괴예방)	생활안전⑩
	25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지 않아요	교통안전⑥
	26	유괴 유형과 예방법 (실종유괴예방)	생활안전⑪
	27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폭력예방.신변보호③
	28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올바른 습관을 가져요	약물.사이버중독 예방⑤
	29	어른들도 다칠 수 있어요	직업안전①
	30	슈퍼태풍이 발생 했어요 ( <b>태풍,폭우비상대응</b> )	재난안전③
	31	안전하게 물놀이를 해요 (안전실천연합회)	생활안전⑫
	32	너무 뜨거워요( <b>폭염 비상대응</b> )	재난안전④
	33	비가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걸어요	교통안전⑦
	34	친구의 물건은 소중해요	폭력예방.신변안전④
학기	연번	활동명	안전영역(횟수)
2	35 36	지나친 장난은 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및 눈건강 체조	폭력예방.신변안전⑤ 약물.사이버중독 예방⑥

- 10 -

Ⅱ.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 9 10 |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유치원계획

	37	나의 몸에는 이름이 있어요	폭력예방.신변안전⑥
	38	킥보드 안전 규칙	교통안전⑧
	39	담배는 우리 몸에 해로워요	약물.사이버중독 예방⑦
	40	안전띠를 매요	교통안전⑨
	41	건강 체조를 해요	약물.사이버중독 예방⑧
	42	집이 흔들려요 - <b>지진대피훈련</b> (초등합동훈련)	재난안전⑤
	43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돼(실종유괴예방)	생활안전⑬
	44	실종 유괴예방 퀴즈 (실종유괴예방)	생활안전⑭
	45	안전이 최고에요	직업안전②
	46	어린이실종 유괴 예방 행동 요령(실종유괴예방)	생활안전®
늰	47	전기감전을 조심해요1	생활안전⑯
학	48	요술안경아,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알려줘(실종유괴예방)	생활안전⑰
기	49	예방접종 꼭 맞아야할 주사예요	약물.사이버중독 예방⑨
	50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생활안전®
	51	킥보드를 안전하게 타요	생활안전⑩
	52	쾅! 폭발은 무서워- <b>유독물질·테러 대응훈련</b>	재난안전⑥
	53	엄마가 아파요	응급처치②
	54	화재, 감전 안전교육 (안전실천연합회)	재난안전⑦
	55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이 아파요	약물.사이버중독 예방⑩
	56	기분 나쁜 접촉에 대처하는 방법	폭력예방.신변안전⑦
	57	어른들이 나를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폭력예방.신변안전⑧
	58	눈 올 때 조심조심( <b>폭설한파비상대응</b> )	재난안전⑧
	59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만나면	교통안전⑩

# 5) 유관기관 연계 안전교육

## \*일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일시	장소	대상	안전교육내용	실시기관
2024.4.	유치원	유아 전체	교통안전교육	안전실천연합회
2024.6.	유치원	유아 전체	화재안전교육	안전실천연합회
2024.7.	유치원	유아 전체	물놀이 안전교육	안전실천연합회
2024.11.	유치원	유아 전체	성교육	안전실천연합회

# 6) 연간 안전교육 시간

안전항목 (기준차시)		생활안전 (실종유괴포함) (19시간)	교통안전 (10시간)	폭력 예방•신변보 호 (8시간)	약물• 사이버중독 (10시간)	재난안전 (6시간)	직업안전 (2시간)	응급처치 (2시간)
학기당	항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1회 이상
학기	1	12	7	4	5	4	1	1
탁기	2	7	3	4	5	4	1	1
총겨	59	19	10	8	10	8	2	2

# 7) 7대 안전교육 관련 학부모 안전교육 계획

\* 신입생입학설명회, 학부모회,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상담기간,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7대 안전교육영역 관련 부모교육 실시

월	7대 안전 영역	안전 교옥 내용	비고
	재난안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법	
4	교통안전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안전하게 타요.	
4	응급처치	질식사고 대비 안전교육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 안전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하여 지문 사전 등록을 해주세요.	
	교통안전	어린이 교통안전	
5	생활안전	유아를 위한 안전한 놀잇감 안내	
5	폭력예방 및신변보호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1	
	폭력예방 및신변보호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2	
	폭력예방 및신변보호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유아 성교육	※ 7대 안전영역별
6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교육	약물 오·남용 안전교육	안내 횟수
6	생활안전	수족구병 및 예방방법 안내	*생활안전: 6
	재난안전	지진대비 국민 행동 요령	*교통안전: 6
	교통안전	안전하게 건너요	*폭력·신변: 6
7.0	생활안전	안전하게 물놀이를 해요!	*약물·사이버: 2
7/8	교통안전	교통사고 에방	*재난안전: 7
	생활안전	폭염 및 호우 대비 / 안전한 여름방학 생활 안내	*직업안전: 1
	생활안전	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수칙	*응급처치: 1
9	폭력예방 및신변보호교육	실종·유괴대비 안전교육1	
	폭력예방 및신변보호교육	실종·유괴대비 안전교육2	※ 상황, 시기 및
	재난안전	화재대비1	생활주제에 따라
10	재난안전	화재대비2	발송되는 안내장
	교통 안전	안전띠의 올바른 사용	순서 및 내용이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발견 방법	조정될 수 있음
11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교육	미디어 안전교육	
11	직업안전	편리한 전기 안전하게 사용해요.	
	교통 안전	체험학습 안전 지도 안내	
	재난안전	겨울철 화재 안전/불이나면 이렇게 해요.	
12	재난안전	한파대비 안전교육	
12	재난안전	대설대비 안전교육	
	생활안전	안전한 겨울방학 생활 안내 별도 안내	

- ※ 생활주제 및 상황에 따라 교육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8) 기대효과
- 가) 안전교육전문강사에 의한 체험중심안전교육을 통해 유아들의 지식, 기술, 태도를 습관화하게 한다
- 나) 아동복지법 5개영역의 안전교육,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생활화 한다.
- 다) 가정과 연계된 안전교육으로 유아, 학부모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생활습관 형성을 도모한다.

# 폐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2024년)

안전교육영역	교육내용		대상	시기	
유치원 안전 계획	· 금모래초 병설 · 유아 안전관리	전 교직원	3월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전 교직원		
	·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전 교직원		
폭력 및 신변안전	변안전 •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전 교직원	4월 담당	
		성교육 담당 교사 교육 이수 후 학급 담임 교사에게 전달 연수 실시	성교육 담당 교사		
		성교육 전달 연수 이수	담임교사		
생활안전/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전 교직원	10월	

<sup>※ 2024</sup>년은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3주기(2024~2027) 중 첫 번째 해에 해당함

# 2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계획

# 폐 재난 대비 훈련 연간계획

일정	훈련 명	훈련유형	대상	비고
3월	3월 민방위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유아	안전주간
4월	미세먼지 및 황사 /합동소방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유아	소방 합동
5월	5월 민방위 훈련/ 지진대피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유아	
6월	태풍·집중호우 비상 대응	토론 기반 훈련	모든 교직원과 유아	
7월	폭염 비상 대응	토론 기반 훈련	모든 교직원과 유아	
8월	8월 민방위 훈련/교통안전	현장훈련/ 토론 기반 훈련	모든 교직원과 유아	
9월	감염병 비상 대응	토론 기반 훈련	모든 교직원과 유아	
10월	합동소방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유아	소방 합동
11월	11월 민방위 훈련/ 지진대피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유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주간
12월	한파 비상 대응	토론 기반 훈련	모든 교직원과 유아	

<sup>※</sup> 본 계획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원내 화재대피 훈련 계획

# 가. 훈련 목표

- 1) 화재 발생에 대비한 현장훈련으로 대피 절차 및 행동 요령을 익힌다.
- 2) 반복적인 대피 훈련을 통하여 안전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 3) 다양한 상황에서의 화재대피 훈련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대처 능력을 기른다.

# 나. 훈련 방침

- 1) 화재 발생 상황에 따른 사전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대피 유도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훈련이 되도록 한다.
- 2) 유아들이 안전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대처 훈련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 3) 화재 대피 훈련 전에 대피장소, 대피 방법, 안전교육 등 사전교육 후 훈련을 진행한다.

## 다. 훈련 안전 지침

구분	પાક
훈련 안전 지침	■ 화재 발생 경보 사이렌과 방송이 나오면 모든 반에서 신속히 정렬시킨다.  ■ 각층별 대피 순서에 따라 신속히 대피시킨다.  - 대피 시 젖은 수건 ·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도록 한다.  - 인솔 교사는 맨 앞에 서서 유아들을 인솔하여 소란하지 않도록 조용히 대피시킨다.  - 엘리베이터는 위험하므로 타지 않도록 하고 계단으로 대피시킨다.  ■ 대피한 학급 순서대로 대피장소에 모인다.  ■ 지정된 대피장소에 반별로 다 모인 후 반별의 대피 상황(피해자, 부상자 등)을 파악한다.  - 전체 대피가 끝나면 대피 인원수와 상황을 보고한다.
교사 대처 방법	■화재경보 장치가 작동한 경우. 즉시 현장을 확인한다. ■화재를 확인하면 즉시 소방서(119)로 신고한다. ■유치원 및 유치원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먼저 큰소리로 교직원 및 유아에게 알리고 상황을 보고한다. ■교직원에 의해 초기 소화를 진행한다화재가 크게 확대될 위험이 있을 경우는 소방차를 기다린다. ■부상자가 있는 경우 즉시 화재 장소에서 구조한 후 응급처치를 한다. ■화재 장소와 규모, 풍향 등을 고려해서 피난 장소를 정한다.

# ☑ 지진대피 훈련계획

## 가. 훈련 목표

- 1) 지진 발생에 대비한 현장훈련으로 대피 절차 및 행동 요령을 익힌다.
- 2)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화한다.
- 3) 체계적인 안전교육으로 상황별 비상 행동 요령을 알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 나. 훈련 방침

- 1) 지진 발생 상황에 따른 사전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대피 유도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훈련이 되도록 한다
- 2) 유아들이 안전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대처훈련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 3) 대피장소, 대피 방법, 대피경로, 이동 시 안전교육 등을 사전에 교육한 후 훈련을 진행한다.

# 폐 비상 배낭의 마련과 관리

# 가. 목적

재난 및 응급상황 시 구호 및 생존을 위한 용품 보관.

# 나, 운용방침

- 1) 보관처: 각 교실 1팩
- 2) 비상 배낭 구성

- 유치원과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및 각종 설비 도면 등), 유아교직원명단, 비상 열쇠, 화재경보기 작동법, 스프링클러 작동법, 설비(전기/가스/수도) 밸브 잠금 방법,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사고 지휘 본부/ 재난 대응 및 지원기관명단과 연락처, 유아 대피장소, 재난 대응 기술 보유 교직원명단, 구급약품 배치 현황
- 비상용 손전등, 건전지, 지압 붕대, 기타 비상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와 장비, 성냥, 양초, 라디오, 방한 담요, 방진 마스크, 약품, 다용도 나이프, 건조식량

# 다. 운용 방법: 분기별 내용물 점검· 보완, 보완·관리 철저

# ♬ 성교육 계획 및 초기 대응 방안

## 가. 목적

- 성폭력 예방 중심의 유치원 성교육과 함께 유아 발달과 타인과의 관계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통해 유아의 성 관련 지식, 기술 및 태도 신장
- 유아 성 행동(문제)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 및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 성 행동 문제 예방 및 사아 발생 시의 대응 능력 제고

# 나. 방침

- 개정 누리과정 내용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 대상 성교육 실시
-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동화, 장소·상황에 따른 역할극, 시청각 자료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운영
- 유치원 성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하여 수시 관찰 및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보고 체계 마련

# 다. 세부 실천 계획

1) 성교육 담당 업무 분장

구분	역한
원장	<ul><li>유치원 내 성교육 및 성 행동 문제 담당 교사 지정 및 연수 이수 지원</li><li>성 행동 문제 발생 시 담당 교사와 함께 지원 요청 및 초기 조사 협조 등 총괄</li></ul>
성교육 담당 교사	<ul> <li>관련 교육 이수 후 학급 담임교사에게 전달 연수 운영</li> <li>유아 대상 성교육 및 부모와의 소통 기획 추진</li> <li>성 행동 문제 발생 시 사안 초기 조사 및 지원 요청 등 대응</li> </ul>
학급 담임교사	<ul> <li>성교육 전달 연수 이수 및 개별 온라인 교육 이수</li> <li>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및 지도·관찰</li> <li>성 행동 문제 발생 시 상황 파악 후 성교육 담당 교사와 원장에게 즉시 보고</li> </ul>

#### 2) 유아의 性 행동 수준 진단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수준별 유아 성행동 기준에 따라 성행동 진단

구분	수준	판단기준	행동의 특성
성 행동	일상적인 수준 (=일반적인 성 관련 행동)	○다른 관심사로 주의 전 환 가능 여부	<ul><li>놀이를 제안하면 관심을 보임</li><li>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음</li></ul>
성	우려할 수준	○지속성 ○반복성 ○은밀한 행동 여부	<ul><li>다른 놀이로 흥미를 끌어도 성 행동의 중단이 어려움</li><li>잠시 멈추었다가도 성 행동을 반복하고 지속함 등</li></ul>
행동 문제	위험한 수준 (또래 간 성적 괴롭힘 포함)	<ul><li>○ 지속성, 반복성,</li><li>은밀한 행동 여부</li><li>○ 강요 및 폭력성</li><li>○ 타인의삼신 파개발생여부</li></ul>	<ul> <li>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다른 놀이에 관심이 현저히 낮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음</li> <li>유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때 저항하거나 분노 행동을 보임 등</li> </ul>

- 3) 性 행동 문제 대응 관리
- **수시 관찰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보고** 체계 유지

행동 수준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유치원 대응	■ 유아 성교육담당자 지정 ■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 지도 관찰 ■ 일상적 행동에 대한 부모 소통· 교육 ■ 유치원 초기 대응 철저 ■(필요시) 교육지원청 자문 요청	■행동 중지, 상황 파악 ■부모 면담 ■유치원 사안 대응 지원단 운영 ■(필요시) 학부모, 유아 대상 관련 교육 ■(필요시) 교육지원청 자문컨설팅 지원 요청	■ 즉시 중지 분리 조치, 모든 유아 보호 ■ 상황 파악 ■ 보호자 연락, 피해 아동 치료 연계 ■ 유치원 사안 대응지원단 운영 ■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및 지원

# 4) 유아 대상 성교육 연간계획

	3월 3주	· 안돼요! 싫어요!라고 말하세요. · 상처주는 말이 아닌 힘이 되는 말을 사용해요	폭력 및 신변안전
5분 나침반 안전교육	11월 4주	<ul> <li>친구가 나를 괴롭히면</li> <li>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본다면?</li> <li>친구의 물건은 소중해요.</li> <li>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li> <li>장난감을 사이좋게 가지고 놀이하는 방법</li> </ul>	폭력 및 신변안전
	12월 4주	· 신변안전퀴즈로 나를 지켜요 · 우린 모두 소중해	폭력 및 신변안전 (아동학대)
	4월 2주	· 우리 모두 친구예요 · 화내지말고 예쁘게 말해요 · 때리면 아파요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5월 5주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성폭력)
7대안전	6월 3주	<ul><li>내 몸의 소중한 곳은 보여주지 않아요</li><li>소중한 내몸을 지켜요</li><li>화장실에서는 이렇게 해요</li></ul>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성폭력)
	7월 4주	• 친구의 물건도 소중해요 • 입장 바꿔 생각해봐 (동화) •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 바르고 예쁜 말을 써요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9월 2주	· 어른들이 나를 아프게하면 어떻게 할까요?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아동학대)
	10월 4주	나를 지켜요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요     나는 소중해요     기분 나쁜 접촉에 대처하는 방법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성폭력)
	11월 4주	• 친구가 싫어해요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성폭력)
12월 3주		・내 몸의 소중한 곳은 보여주지 않아요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성폭력)
유아 성교육 관련 규정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학기당 2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련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성교육 관련 안전교육 시수		폭력 및 신변 안전교육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 교육
		11	8

# 5) 기대효과

- ㅇ 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다양한 성교육으로 유아의 성인지감수성 함양
- ㅇ 유아 성행동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 제고

# 🔎 유아 안전관리

# 가. 유치원 내에서의 시설물 사용 및 급식 안전교육

구분	_	지도내용
교실 복도 계단 난간	유아 안전 수칙	<ul> <li>교실이나 복도에서 공놀이나 술래잡기 놀이를 하지 않는다.</li> <li>두 세 개의 계단을 한꺼번에 오르고 계단 난간을 넘거나 타고 내려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li> <li>반드시 우측 통행을 한다.</li> <li>계단 및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li> <li>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li> <li>여러 사람이 함께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앞사람과 닿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움직여야 한다.</li> <li>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장난치거나 뾰족한 연필 등으로 장난을 치면 다치기 쉬우므로 조심한다.</li> <li>끈이나 줄로 목을 잡아당기는 장난은 몹시 위험하므로 삼가한다.</li> <li>친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는다.</li> </ul>
책상	교사	•책상 모서리 부분은 라운딩 또는 충격완화 고무를 부착하는 등 충격으로 인한 상해를 예방한다. •책상의 정기적 수리 및 교체. 안전도 유지 및 못 등 돌출부에 의한 자상을 방지한다.
	유아 안전 수칙	•책상에 걸터앉지 않는다. •의자에 앉으려는 친구의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하지 않는다. •좁은 통로에서 뛰지 않는다.
화장실	교사	•세균에 따라 일반적인 손 세척으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세균도 있다. 따라서 위생적인 손

		씻기를 위해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방법을 익히게 지도한다.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한 줄로 서서 이용한다. •화장실 사용 후에 물을 반드시 내린다.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으면 세균, 먼지를 씻어내 주어 전염병의 70%를 예방한다.
	교사	• 평소에 예절교육과 함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배식 과정에서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앞 사람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흐르게 되면 미끄러워져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 하며, 만약 음식물을 바닥에 흘렸을 경우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바로 휴지로 닦도록 한다.
점심시간	유아 안전 수칙	

# 나.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상황		행동 요령
국 국물이나 뜨거운 음 식에 데었을 때		<ul> <li>・상처 부위에 냉수를 끼얹거나 냉수에 담가서 상처 부위의 열을 식힌다.</li> <li>・수돗물로 상처를 식힐 때는 물줄기가 너무 세어 상처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수압을 조절한다.</li> <li>•더러운 물건이나 먼지가 화상 부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li> <li>•민간요법으로 간장이나 된장을 바르는 것은 세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좋지 않다.</li> <li>•상처에 탈지면이나 기타 오일을 사용하면 안 된다.</li> </ul>
부상 발생 시		•유아의 부상 정도를 알아보고, 응급 처치를 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속히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물질 을 삼켰 을 때	식도에 걸린 경우	• 증상: 호흡하기가 힘들고, 식도의 벽을 손상 시켰을 경우 열이 오르며, 음식물을 삼킬 때고통을 느낀다.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지기도 한다. • 응급처치: 혀를 앞쪽으로 끌어내듯 해서 구역질을 하여 이물질을 토하게 한다.
	기도에 걸린 경우	• 증상: 얼굴빛이 금세 파래지고, 기도가 완전히 막히게 될 경우 말과 기침, 호흡도 할 수 없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 응급처치: 하임리히 요법 시행 1) 처치자는 환자의 등 뒤에 선다. 2) 한쪽 팔로 환자의 허리를 감싼다. 3)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 방향을 환자의 배꼽과 명치끝의 중앙 부분에 둔다. 4)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준 손을 감싼 후 빠르게 후상방으로 환자의 배를 밀쳐 올린다. 5) 환자가 이물질을 뱉어내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반복한다. 6) 의식을 잃고 쓰러질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 말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침을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는 119에 연락한다.

- 19 -

	※ 주의사항: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하임리히 요법을 시행하다가 오히려 이물질이 깊숙 이 들어가거나 복강 내 장기가 손상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119에 신고한 후 실시한다.
기관지에	• 증상 : 침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기침을 심하게 한다.
걸린 경우	• 응급처치 : 이물질을 꺼내려 하지 말고 등을 두드리거나 하여 아래로 내려 보낸다.

# 和 감염병

# 가. 예방

- 1) 감염병 발생 차단
- 유아, 교직원, 보호자(가정통신문 발송) 보건교육 실시
- 손 씻기 철저 지도 : 하루에 8번 이상 30초씩('1830'손 씻기 운동) 세정 원칙
- 예방접종 지도
- 규칙적으로 실내 환기, 화장실 위생용품 비치
- 소독: 교실 일상 소독 매일 1회 이상 실시 / 2개월에 1회 주기적 실시 또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유치원 정기 소독실시
- 2) 전파 방지
- 감염병 발생 유아 격리, 등원 중지, 보호자와 연락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함
- 감염병 유행 시 대중시설이나 단체 활동 자제, 유치원에 외부인 출입 자제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유도, 기침 시 코와 입을 가림

# 나. 대응 대처

1) 유치원 감염병 대응 체계의 구분

구 분	상 황	관리체계	주요 조치내용
평상시 대응 체계	감염병의 산발적 발생     감염병의 유행     동일 학급 내 의심 또는 확진 환자 2명 이상 발생     급성호흡기감염병의 경우 전체 인원의 5% 이상 발생	유치원 내 감염 병 유행 시 유치원 감염병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 관리     감염자 조기 격리 및 유증상자 관리     접촉자 관리 및 추가 발병자 파악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단체 활동 자제     시설물 및 취약지역 소독, 방역 활동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ul> <li>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국적 확산</li> <li>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li> <li>국내 수인성,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li> </ul>	국가 위기 상황 발령 시 유치원 감염병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li>위기 경보 수준에 따른 역할 수행</li> <li>방역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li> <li>지역 내 의료기관에 의료자문</li> <li>확산양상에 따른 휴업 고려</li> </ul>

## 2) 평상시 대응 체계

단	계	상 황	주요 대응 내용
대	ਖ]	•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 환자 발생 전	<ul> <li>가염병 예방관리 계획서 수립 및 감염병예방 활동 시행</li> <li>가염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li> </ul>

			※ 대응 단계에 따라 추가 교육 실시
대응	1단계 유증상자 발견 시 대응	• 유치원 내 감염병 유증상자 1명 이상 확인	<ul><li>초기 응급처치</li><li>보호자 연락 후 귀가</li><li>등원 중지 안내 및 병원 진료 의뢰</li></ul>
	2단계 환자 파악 및 유행 여부 판단	• 유치원 내 감염병 확진 또는 의사 환자 1명 이상 발생	<ul> <li>유치원 내 감염병 유행 감시</li> <li>담임교사 : 학급별 환자 파악</li> <li>보건담당 교사 : 학급별 환자 집계 분석</li> <li>감염병 발생 양상에 따른 유행 여부 판단</li> <li>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li> </ul>
	<b>3단계</b> 유치원 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및 확산 방지	유치원 내 감염병 유행     《유행 판단기준(예시)>     동일 학급 내 2명 이상 발생     급성열성호흡기 질환: 전체 인원의 5% 발생	<ul> <li>유치원 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그림5)</li> <li>환자 파악팀(담임/학년부 장): 유증상자, 접촉자, 2차 감염의심자 등 파악하여 보건담당 교사에게 알림</li> <li>환자관리팀(보건담당 교사): 유증상자 처치 및 진료 의뢰,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유아 및 학부모 보건교육</li> <li>행정지원팀(행정실장): 방역, 예산지원, 역학조사 협조, 대내외 홍보</li> <li>학사관리팀(교무부장): 상황판 작성, 수업 결손 대책 수립, 등원 중지 유아의 출결사항 확인, 생활지도</li> </ul>
	<b>4 단계</b> 상황 종료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않음     파악된 모든 접촉자가 최대잠복기까지 의심 증상이 없음	› 보건담당 교사 : 기간별, 학년별 확진 환자 수, 처리 내용, 역학조사 내용 등을 정리하여 감염병 발생 종료 보고

# 3)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 경보에 따른 역할

단계	판 단 기 준	역 할
1단계 관심 (Blue)	<ul> <li>해외의 신종 감염병 발생</li> <li>국내의 원인불명 감염 환자 발생</li> <li>태풍. 집중호우 발생 기상 정보</li> </ul>	<ul> <li>▶ 유아 및 교직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li> <li>▶ 대응 태세 점검</li> <li>▶ 감염병 관리 대책위원회 업무 분담 점검 및 업무 담당자 교육</li> </ul>
2단계 주의 (Yellow)	<ul> <li>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li> <li>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발령</li> <li>국내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li> <li>지역별 재출현 감염병 발생</li> <li>대규모 침수지역 및 수인성감염병 발생</li> </ul>	<ul> <li>▶ 감염자. 유증상자. 유사 환자 파악 보고</li> <li>▶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 조치</li> <li>▶ 원내 감염 유아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보호자 가정통신</li> <li>▶ 환자 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우려자 파악 후 격리(등원 중지) 및 보호자에게 통보</li> <li>▶ 관리대장. 소독 관련 물품, 진단 관련 물품 (체우계 등)</li> </ul>
3단계 경계 (Orange)	<ul> <li>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후 타 지역으로 전파</li> <li>국내 신종 감염병의 타지역으로 전파</li> <li>재출현 감염병의 타지역으로 전파</li> <li>수인성 감염병의 타지역으로 전파</li> </ul>	<ul> <li>► 단니네'장, 소속 단단 울품, 산단 된단 울품 (세근세 등) 등 점검</li> <li>▶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실시 및 손 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강화</li> <li>▶ 음용수 제공시설 등 위생관리 강화/ 환자 발생교는 제공 중단</li> <li>▶ 체험학습 등 단체 활동 자제</li> </ul>
4단계 심각	•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 교육 기관 확산 징후	<ul> <li>▶ 감염자, 유증상자, 유사 환자 파악 (유아, 교직원) 보고</li> <li>▶ 보건소 및 교육청 보고체계 점검 및 확인</li> <li>▶ 보호자 연락체계 및 원내 감염병 관련 보고체계 점검</li> </ul>

Ⅱ.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 2

단계	판 단 기 준	역 할
(Red)	<ul> <li>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li> <li>재출현 감염병의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li> <li>수인성 감염병의 전국 교육기관 확산 징후</li> </ul>	및 교직원 교육  P 원내 감염 유아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보호자 가정통신  P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 조치  P 환자 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우려자 파악과 잠복기간 동안 별도 격리 및 보호자에게 통보  P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 실시 및 손 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강화  P 음용수 제공시설 등 위생관리 강화/ 환자 발생교는 제공 중단  P 방역 기관 및 교육청 등과 협의 하에 필요시 휴업/휴원 조치  M험학습 등 단체 활동 금지

# 4) 국가 위기 경보에 따른 기관별 임무 및 역할

단계	임무 및 역할		
1단계	교육청 (교육지원청)	<ul><li>▶ 관련 정보 전파 등 예방 활동 강화</li><li>▶ 대응 태세 점검</li></ul>	
·····································	유치원	<ul> <li>유아 및 교직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li> <li>대응 태세 점검</li> <li>감염병 관리 대책위원회 업무 분담 점검 및 업무 담당자 교육</li> </ul>	
	교육청 (교육지원청)	<ul><li>▶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li><li>▶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추세 파악 보고</li></ul>	
2단계 주의(Yellow)	유치원	<ul> <li>▶ 감염자, 유증상자, 유사환자 파악 (유아, 교직원) 보고</li> <li>▶ 감염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격리 조치</li> <li>▶ 원내 감염유 아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보호자 가정통신</li> <li>▶ 환자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우려자 파악 후 격리(등원 중지) 및 보호자에게 통보</li> <li>▶ 관리대장, 소독 관련 물품, 진단 관련 물품 (체온계 등) 등 점검</li> <li>▶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 실시 및 손씻기 철저 지도 등 개인위생 강화</li> <li>▶ 음용수 제공시설 등 위생관리 강화/ 환자 발생교는 제공 중단</li> <li>▶ 체험학습 등 단체 활동 자제</li> </ul>	
3단계	교육청 (교육지원청)	<ul> <li>▶ 유관기관 협조 체계 가동</li> <li>▶ 관련 정보 전파 등 활동 강화</li> <li>▶ 각급 유치원 휴업기준 마련</li> </ul>	
경계(Orange)	유치원	<ul> <li>▶ 방역 기관 및 교육청 등과 협의 하에 필요시 휴업/휴원 여부 결정 시행</li> <li>▶ 체험학습 등 단체 활동 자제/금지</li> </ul>	
	교육청 (교육지원청)	▶ 필요시 확산 대비 일제 휴업(휴원) 검토 및 시달	
4단계 심각(Red)	유치원	<ul> <li>▶ 방역 기관 및 교육청 등과 협의 하에 필요시 일제 휴업/휴원 조치</li> <li>▶ 체험학습 등 단체 활동 금지</li> </ul>	

- 5) 감염병 발생 시 등원 중지 조치
- 근거 :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 담임교사는 의사 진단에 의거 감염성질환임이 유선으로 확인되면 우선 등원 중지 시킴
- 확인 서류 : 질병 확인서 및 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부
- 6) 유아 행동 요령

구 분	행 동 요 령	
예방 시	<ul> <li>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평소 비누 등으로 손 씻기를 생활화 함</li> <li>충분한 수면과 영양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임</li> <li>창문과 출입문을 2~3시간 간격으로 자연 개방하여 환기함</li> <li>물은 항상 끓여 마시고 음식은 완전히 조리하여 먹음</li> <li>눈병 유행 시 눈을 만지지 말고 수건, 비누 등 개인 물품을 사용</li> </ul>	
증세 발견 시	• 발열, 두통, 설사, 수포, 눈 가려움 등 감염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림	
증세 진행 시	<ul> <li>기침과 재채기를 할 시에는 코와 입을 휴지나 소매로 가리고 함</li> <li>호흡기 감염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li> <li>수건 등 위생용품을 따로 사용하고 수영장 등의 출입을 삼감</li> <li>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고 손을 씻음</li> </ul>	

# 의 식중독

# 가. 사고 예방

1) 식중독 주요증상

구 분	내 용
식중독 정의	식품에 함유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로 발생 또는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함
주요 증상	발열, 두통, 복통, 설사, 구토, 메스꺼움 등
발병 시기	원인균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원인식품을 섭취한 후 30분~24시간 이내에 나타남

# 2) 유치원 급식 식중독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관 심(Blue)	주 의(Yellow)
판단 기준	<ul> <li>식중독지수: 10~34</li> <li>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은 기후의 변화</li> <li>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잦은 봄·가을철</li> </ul>	식중독지수 : 35~50     해안지방 어패류에서 비브리오균 검출 보도     일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일부 유치원에서 복통 및 설사 환자 발생
조치 사항	<ul><li>↓ 식중독 정보수집 및 전파(교육부/교육청)</li><li>▶ 급식 관리 철저,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유치원)</li></ul>	▶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교육부/교육청) ▶ 복통·설사 환자 모니터링 강화(유치원)
구 분	경 계(Orange)	심 각(Red)
판단 기준	<ul> <li>식중독지수: 51~85</li> <li>집단급식소에서 산발적 식중독 발생</li> <li>일부 지역에서 복통설사 환자 100명 이상 발생</li> <li>10개 유치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li> </ul>	식중독지수 : 85이상     집단급식소에서 100명 이상 식중독 발생     단위유치원 유아의 30% 이상 설사 환자 발생     30개 유치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조치 사항	<ul><li>급식사고 대책본부 운영(교육부/교육청)</li><li>체험학습 억제, 급식 중단, 대책반 운영(유치원)</li></ul>	<ul><li>급식사고 대책본부 비상근무(교육부/교육청)</li><li>급식 및 체험학습 중단, 대책반 비상근무(유치원)</li></ul>

# 나. 대응·대처

# 1) 유아 행동 요령

구 분		행 동 요 령
예방시	유 치 원 내	<ul> <li>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평소 비누 등으로 손 씻기를 생활화</li> <li>식사 도구(식판, 수저)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함</li> <li>비위생적인 조리식품, 부정·불량식품을 사 먹지 않음</li> </ul>
	유 치 원 밖	<ul> <li>식품은 유통기한, 원산지, 식품 성분(첨가물) 등을 확인한 후 구입</li> <li>냉장·냉동식품(소시지, 우유, 아이스크림 등)은 보관상태를 확인</li> <li>식중독 의심증세(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 시 담임선생님께 알림</li> </ul>
증세 발견 <i>/</i>		• 식중독 환자는 치료상태 및 증상 완치 시까지 담당 교사에게 알려야 함

## 2) 유치원 급식 식중독 발생 시 유치원 대응 체계

단 계		주요 대응 내용	체크리스트
평상시		<ul> <li>유치원 급식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모니터링</li> <li>'유치원 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구성 및 교직원 대상 연수</li> <li>유치원 급식 식중독 모의훈련 실시</li> <li>유치원 급식 종사자, 교직원, 유아 대상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li> </ul>	• '유치원 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이 구성 되어 있는지 확인
발 생 당	1 단 계	<ul> <li>평소와 다르게 보건실 이용 유아 중 식중 독 의심 환자 다수 있을 시 유치원 관리자 에게 즉시 보고</li> <li>담임교사 결석, 유증상자 파악하여 최초 환자 수 집계</li> <li>원장 주재 긴급회의 개최</li> </ul>	• 담임교사 유증상자 파악할 때 반별 손들기 등 전교생 대상 전수조사 금지 • 유치원 급식 외 외부요인(외부 간식, 실 습, 현장 체험학습, 주말 결혼식 참석 등)이 있었는지도 추가 파악
일	2 단 계	• 식중독 의심 환자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관할 시·군·구청(보건소) 및 교육 청에 신고 및 보고	• 식중독 의심 환자 2인 이상 발생 인지 즉시 관할 시·군·구청(보건소)에 신고하 였는가? (어길 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발 책이 다이 이미	3 단 계	• '유치원 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가동 • 유치원 급식 중단 조치 및 대체 급식 방안 마련	<ul> <li>유치원 급식 중단 여부는 보건당국(보건소, 역학 조사관 등) 의견 수렴하여 원장이 최종 결정</li> <li>유치원 내 정수기 사용 중지 및 개인물지참이나 끓인 물 제공 등 대책 마련</li> <li>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및 문자 발송</li> </ul>
	4 단 계	식중독 원인 파악을 위한 보건당국의 역 학조사 실시     보건소: 환자 가검물 채취 및 설문조사     시군구: 보존식, 음용수, 환경가검물(칼, 도마, 행주 등) 채취     지방식약청: 원인 식품 추적조사, 간이신속 검사     언론 대응은 지방식약청에서 단일화	<ul> <li>역학조사 종료 전까지 보건소와 협의하여 유아들 귀가 보류</li> <li>보존식 및 환경가검물 현장 보존 철저(훼손 금지)</li> <li>언론에서 취재 요청 시 유치원에서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지방식약청으로 안내</li> </ul>
	5 단 계	• '유치원 급식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보고' 교육청으로 서면 보고	• '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서식 참조

당 일 이 후	6 단 계	식중독 환자 완치 시까지'환자 발생 일일 상황 보고' 교육청으로 유선 보고    급식실 및 원내 대청소 및 소독	• '학교급식 안전 매뉴얼'서식 참조
역학조사결과판명시	7 단 계	역학조사 결과를 참고하고, 보건당국(보건소, 역학 조사관 등)과 협의하여 급식 재개결정     식중독 발병 유아 치료비 등 보상대책 마련(학교안전공제회에 반드시 통지)     식중독 역학조사 결과 식재료 납품업체에 귀책 사유가 있을 시 계약 해지 등 제재조치     유치원로 통보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급식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교육청으로 서면 보고	유치원 단독으로 급식재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학교안전사고예방 및보상에관한법률제44조②항)     '학교급식 기본 방향'서식 참조

# **의** 외부체험활동

# 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준수 사항

- 허가·등록된 시설 이용
- 사전(현장)답사 및 이동 경로별 교사, 유아 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교통수단별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선박·항공·기차 등 포함)
- 대피로 확인 및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교육 실시
- 유아 수송 버스 운전자 음주 감지 협조 (음주 확인 시 운전자 교체 및 112 신고)
- 유아 수송 차량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 15분 이상 휴식)

## 나. 현장답사 시 기타 유의 사항

- 답사 중 또는 답사 전후에 관련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지 금품·향응 기타 편의 사항을 제공받거나 업체에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예 ) 유아 대상 할인 티켓, 교사 무료입장권, 관리자 독실 요구 등
- 현장답사 시 무리한 일정 지양
- 현장답사 업체 위탁 지양(업체로부터 민원 발생, 감사 지적사항)
- 유해환경 인접 여부, 위험지역, 이동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안전사고 발생 취약 지역 파악에 중점을 두어 답사

#### 다. 지도교사의 유의 사항

- 안전교육과 승·하차 안전교육
- 모든 행사 시 사제동행 임장 지도
- 자연을 보호하는 착한 심성을 기르도록 지도
-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질서의 중요성 지도
- 여행 시 개별 행동 금하고 교사 본분에 어긋나는 일 없도록 지도
- 활동 후 평가회 통해 미비한 점 보충

#### 라. 교통안전 지도

- 차량 승하차 시 질서를 지키며 차량번호 확인
- 각 차량 승차 담당 교사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내에서 기사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내 예절을 지키도록 한다.
- 손, 머리 등을 차찬 밖으로 내지 않고, 창밖으로 오물(빈병, 깡통, 휴지 등)을 버리지

않도록 지도

- 멀미하는 유아는 미리 멀미약을 복용토록 점검하고 차내에 청결을 위해 휴지나 오물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휴지통에 버리도록 지도
- 유아 개인에게 배정된 차량 이외의 차량으로 임의 이동하지 않도록 지도

# ☞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계획

# 가, 목적

유치워 밖 체험학습 안전 대책 수립을 통해 안전한 체험학습을 운영한다.

## 나, 방침

- 1) 각종 유치워 밖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후 시행한다.
- 2)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체험학습을 활성화한다.
- 3) 체험학습 시 유아 안전을 위한 사전 안전 교육방안을 마련한다.
- 4) 체험학습 시 안전한 인솔을 위한 인솔자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다. 체험학습 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사항

사전답사	-	○ 교육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1회 실시
교사 안전 연수	-	ㅇ 현장체험학습 업무 담당 교사는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사전 안전 연수실시
유아 안전교육	-	ㅇ 참여 유아들에 대해 차량 이용, 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시고 예방 교육 등 실시
참여 여부 조사	-	o 체험학습 내용 사전 안내 및 참여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

비상 연락체계 구축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체험학습 참여 유아 , 학부모 및 인솔자 비상연락처 확보
-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SMS (문자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연락
- 사안 발생 즉시 교육지원청에 피해 상황 보고

# 라. 현장체험학습 지도내용

구분	지도내용	
출발 전	•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 • 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행렬에서 이탈해도 인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마련 • 운송업체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운전자 음주 금지조항 및 보상 조항 명시 •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치된 차량이 일치하는지 확인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요청(유치원→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팩스로 요청) •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작성 • 유아 수송 버스 호송 협조(음주 측정 등) 요청(해당 경찰서로 요청) • 유아·인솔자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유아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 지도교사에게 즉시 보고 ・교육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기 ・차량 운행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탑승 중에는	

Ⅱ.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계획 27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

- 활동 전 과정에서 안전 및 생활지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인솔 및 지도교사는 체험 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 장비의 비치 여부,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교육 기간 중 사전 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지도교사 간 기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육성을 제고
- 인솔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
- 운전자와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 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 운행에 필요 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유아가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 인솔 및 지도교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사 시간을 포함한 각종 교육활동에 반드 시 참여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고 예방에 주력
- 교통안전지도, 화재 예방 교육, 위험시설 및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 지도, 질병 예방 교육, 등 을 수시로 점검
- 유아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사전에 교육
- 독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록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 마.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교사

- 1) 비상 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 사안 발생 즉시 신고 및 유치원과 시흥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피해 상황을 즉시 보고
- 2) 현장체험학습 전 유아 와 인솔자에 대한 휴대폰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유치원에서 관리한다.
- 3) 유치워·교사·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즉시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 하여 연락한다.
- 4)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한 사안(고) 인지 즉시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서를 제출한다.
  - 유치원 → 시흥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유아안전과

### 바. 사안 발생 시 주체별 역할 안내

 $\Rightarrow$ 

 $\Rightarrow$ 

**유아** 교사 및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

- 응급상황 발생 시 교사 및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 응급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119 혹은 경찰서에 신고하기

<u>인솔 교사</u> <u>담임 교사</u> 환자 상태 파악

- •환자 상태 관찰, 신속한 응급처지, 의료기관 이송 여부 결정 (상태가 중한 환자일 경우 응급처치 후 즉시 119 연락 또는 이송 차량을 확보하 여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
-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상세히 연락
- 응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

원장과 관리자 사고 경위 파악 □ ☆ 사후 대책 • 지역 및 도교육청에 사고 경위 보고
• 환자 병문안 등 치료를 위한 지원
• 사후 대책 추진 시 유치원 창구 일원화



행정 사항

- •진료 결과를 유치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보건일지에 기록
- 유치원안전공제회의 보상이 가능한 경우 해당 담임교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가 보상신청

# 물놀이 안전 계획

## 가. 목적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Rightarrow$ 

#### 나. 방침

- 방학 시작 전 물놀이, 수상 안전에 대한 예방 교육 철저
- 대부분의 물놀이 사망사고가 여름 휴가철에 하천, 계곡에서 발생되므로 여름 휴가철 이전에 집중교육 실시
- 아전한 물놀이 지도와 위기 상황 시 적절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 및 교육

#### < 익수사고 발생 보고 및 상황관리 요령 >

- 1) 주요 내용
- 보고단계: 상황 1보(발생 3시간 내 최초 보고), 상황 2보(경찰 조사 진행 사항 보고), 상황 3보(경찰 조사 결과 확정 사항 반영 보고)
- 2) 보고기준
- 하천·계곡 등에서 인명사고 발생 시 최초 보고는 반드시 익수사고로 명기하여 보고한 후 경찰의 사고원인 조사 반영 보고
- ※ 경찰의 최종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익수사고"라는 명칭 사용

- 3) 보고단계별 유의 사항
- 최초 보고(1단계) : 익수사고로 명기하여 보고(\*물놀이 인명사고 단정 보고 금지)
- 예시) 사고자는 일행들과 피서차 방문하여 익수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
- 중간 보고(2단계) : 경찰조사 진행 사항(원인 조사) 보고 단계
- 예시) 사고자는 일행들과 다슬기 채취(하천변에서 행락 행위 등) 중 미끄러져 사망 또는 물놀이 중 수영 미숙으로 인해 사망 등과 같이 사고원인 명기
- ※ 익수사고 중 다슬기 채취, 하천 도강, 어로작업, 실족, 낚시, 수난사고 등으로 기재
- 최종 보고(3단계) : 경찰 조사 결과에 의한 최종 확정 보고
-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계획
- 목표 : 한 명의 아이라도 모두가 함께 지키는 물놀이 사망사고 Zero화
- 주요 내용
- ① 물놀이 안전관리 협력 및 상황관리
- 모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협력체계 구축
- ②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대상자 : 유치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 교육내용 : 물놀이 안전 수칙 및 상황대처 요령 숙지
- ③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 가정통신문 및 SMS 발송, 학교 홈페이지 게시, 팝업창 등을 통해 행동 요령 전파

# ☞ 안전 약자(요보호학생) 현황 및 관리 방안

#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 이유로 일반 학생들과 달리 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 요보호학생 한 학생을 말함 • 각 반 요보호자 명단을 교사의 교무수첩에 기재 • 교내 전산망을 통한 자료 공유 및 교사 연수 시 안내 • 학년 초 확인되지 않는 경우나 이후 발병한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명단을 파악하여 관리 • 학부모, 담임교사의 수시면담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 상태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관리함 • 급우들에게 장애에 대해 설명하여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 요보호학생 안 (급우들에 대한 설명과 도움 요청은 요보호 학생의 부모가 공개를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전대책 • 체육, 외부체험활동 등 활동량이 많은 시간에 특히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한 • 보건교육을 통하여 사고 방지, 시력 보호, 예방접종 등의 필요성을 가르침 • 의학적 치료를 하지 않는 학습 장애, 언어 장애나 정신적 문제를 가진 생의 경우는 상담교사와 협조하여 전문 상담 실시 • 응급상황 시 요보호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3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 후 학교 시설 안전 점검 · 관리 · 조직

### 가. 학교 시설 안전 점검

- 1)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운영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 관할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점검실시
- 기간 : 2024. 3. ~ 2025. 2 \*매월 4일(4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 구성원 역할

담당자	역 할
원장, 행정실장	• 전체 시설 세부 점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담임교사	· 유아 하원 후 시간 등을 이용해 교실 및 화장실, 복도 안전 점 검
행정실장	· 점검 결과 기록 유지 확인, 점검 결과 확인
행정 주무관	· 점검 결과 기록 및 행정실장 보고
 안전 담당 교사 행정 주무관	<ul><li>매월 안전 점검의 날 계획 및 사례보고 작성, 보관</li><li>점검 결과 수합. 확인 및 보고</li></ul>

- 2) 안전 점검의 날 운영
- 계절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취약시설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의 날 운영
- 월별 '안전 점검의 날'운영 주요 실천 과제와 관련하여 안전 점검의 날 실시
- 교실안전점검표 및 시설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관
- 3) 안전 점검의 날 안전교육
- 재난 안전과 연계된 내용으로 계기 교육 실시
- 기초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학생 대상 안전교육 강화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 활용
- 4) 안전 점검의 날 행정 사항
- 학교 안전 점검의 날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학교 안전 점검실시

#### 나.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 및 조치

- 1) 학교 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계획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 학교안전법 제7조는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학교 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시설물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표9-64> 학교 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 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ㆍ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u>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u> 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안전시설에 대하여 <u>연간</u>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설 2014.11.14.>

- 점검 대상: 전체 시설
- 점검 내용: 학교 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6개 분야 26개 항목

#### <표9-65> 학교 시설 안전관리 기준 개관

분야	안전기준 항목		
건축물	건축물 주변, 교실 바닥, 교실 벽, 교실 문, 교실 창호, 특별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 그 밖의 사		
전기시설			
설비시설	냉난방 설비, 환기시설, 급배수설비 등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옥내 소화전 설비 등, 피난설비		
<u>가스</u> 시설	저장시설, 배관, 가스 기기		
실험실습시설	실험 실습 설비, 비품, 약품 보관설비		
6개 분야	26개 항목		

- 점검 절차 및 방법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유치원 시설 점검
- 점검 결과 조치계획
- 점검 결과 안전기준 미흡 시설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기준에 적합조치토록 노력하며,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에 반영

#### 실시 결과 보고 서식

- 가. 점검 일시 : 2024. . .
- 나. 학교 자체 개선 사항

	주요 내용	투입 예산(천원)
1		
2		
3		
계		

다. 개선 지원 요청 사항: 학교 ⇒ 교육(지원)청

	주요 내용	추정 소요 예산(천원)
1		
2		
3		
계		

[붙임]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결과표 1부. 끝.

# 유치워 출입 관리

#### 가 외부인 출인 통제 방침

- 1) 주간 (08:30~16:30)
- 출입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리 철저
- 출입무 통제시스템으로 외부인 출입 시 사전 승인 필요
- 외부인 방문 시 출입자 신원 및 출입 목적·장소 등 확인
- 핔요시 서약서 등 보안 조치
- 외부 방문객 반드시 담당 직원이 퇴원 시까지 동행
- 방문과 무과하 구역 출입 통제
- 제한지역 내·외부 출입자 동태 감시 및 안내. 통제 등 실시
- 보안 유지 구역 촬영 금지 등 조치
- 공무 외 출입 금지
- 워내 CCTV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 학기 주간에는 배움터지킴이 유아 보호 인력을 활용하여 유치워 주변 순찰
- 2) 야간, 공휴일
- CCTV를 통한 모니터링 설날, 추석 등 긴 연휴 기간에는 보안 강화
- 외부인 유치원시설 사용 요청 시 반드시 사전 파악 후 승인
- 교사연구실, 행정실 비상 연락망 정비하여 비상사태에 만전
- 경찰서, 소방서,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공고
- 비상연락망 상시 게시하여 비상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
- 야간, 공휴일은 무인 경비 용역회사가 임무 수행

#### 나, 행정 사항

- 출입자 통제로 인한 일반인, 민원인의 불편 해소책 강구
- 매월 1회 이상 지문 발급 현황과 실태조사 철저
- 인사이동•퇴원 시 시스템상 지문정보 삭제

# ☞ 안전 문화 확산

#### 가.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 가 협력 체계구축

- 1) 안전 가치의 최우선적 인식 문화 확산
- 유치워 안전의 가치는 안정적 교육활동 수행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제반 교육활동 계 획 수립부터 운영까지 최우선적으로 학교 안전의 가치를 고려하는 유치원 문화 만들기
- 2)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 간 역할 명료화
- 워잣은 유치워 안저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과 직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설정
- 유치원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
- ※ 유치원 안전은 담당 교원만으로는 업무추진이 어려우므로 교원과 직원 간 적극적인 협 력과 소통이 필요

#### 나. 학교 안전 자가점검표

1) 학교 안전 자가점검표 작성

- 유치원 구성원의 안전 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학교 안전 자가점검표"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계획수립에 체크하여 작성
- 2) 3대 진단(위험성 진단, 학교 안전 풍토 진단, 교원 안전 역량 진단) 내용의 포함
- 자가점검표에는 기존의 교육부 연구에 의해 마련시행 중인 위험성 진단, 학교 안전 풍토 진단 교원 안전 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 3대 진단(위험성 진단, 학교 안전 풍토 진단, 교원 안전 역량 진단)은 2019년도부터 학 교안전 자가점검표로 대체되므로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 ☞ 다줏밀집 인파사고 예방 계획

- 1) 다즛밀집 행사 시 사고 예방을 위하 교육 및 교육행사 진행 시 학생·교직위 사람들 가 대형간격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2) 사고 발생 시 119신고 및 응급조치 등 상황에 맞는 응급조치 십시
- 3) 행사 전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교육 실시
- 학교 축제, 운동회, 입학 및 졸업식, 현장학습, 교외 행사장 방문 등에서 유아 교직원, 사람들 간 대형 간격을 유지하기
-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앞 사람과의 간격 유지하며 걷기
- 움직일 수 없거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장소 벗어나기
- 주의산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전방 주시하며 걷기
-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상황 알리기
- 팔짱을 끼거나 가방, 옷 등으로 흉부 보호하기
- 넘어졌을 때 위험성 줄이기 위해 몸을 작은 자세로 웅크려 보호하기
- 운동화처럼 편하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신발 신기



# 안전사고 피해회복



# 학교안전공제회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 구 분

사고 박생

#### 엄 무 처 리

유 아

- 학교 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급식,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선취·점촉에 의한 질병 등

유치원

사고통지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 www.schoolsafe.or.kr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내부결재 후 통보 버튼 눌러 공제회 전송

시·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 사고통지서 접수

유 아

치 료

병원 치료

유치원 또는 학부모

공제급여 청 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PC 나 스마트폰)
- www.schoolsafe.or.kr
- (유치원)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학부모)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사고통지서 조회 후 청구서 입력
- 해당 지역 공제회 시스템에 첨부서류 제출
- ※ 첨부서류: 청구서, 통장 사본, 진료비계산서, 50만원 이상 시 진단서·등본 추가

시·도 공제회 공제회접수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 지급 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통보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학부모

심사청구

- 공제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시·도 공제회의
- 재심사청구
- 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 배상 책임 공제급여 청구 절차

#### 구 분

#### 업 무 처 리

# 피공제자 및 제 3자

사고 발생

- 학교배상책임사고
- 교육활동 또는 학교 시설물 관리업무로 인하여 제 3자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 및 교직원·교육확동 참여자의 차량파손 피해
- 어린이놀이시설 하자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급식 관리·운영과 관련하여「식품위생법」제10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되 과태료
- 학교 승강기 사고에 의한 인적·묵적 피해
-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유치원

사고통지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등록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중앙회 전송

공제 중앙회

사고 접수

• 사고통지서 접수

피공제자 및 제3자

치료·수리

• 병원 치료 및 파손 물품 수리 진행

유치원 또는 피해자

공제급여 청 구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PC만 가능)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통지서 조회 후 공제급여청구서 입력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
- ※ 진단서, 영수증, 수리 내역서, 수리 완료 사진, 통장 사본 등

공제 중앙회

청구 접수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지급 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

피해자

심사청구

• 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 3 유치원 안전사고 시 학생 심리지원

# 가. 목적

유치원 구성원의 대규모 사망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기 발생 시 유치원 구성원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예방 등 유치원이 본래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이차적인 후유증과 심각한 사회적 확산을 방지

# 나. 유치원의 역할

- 1) 사전 조치사항
- 유치원은 유치원 내 위기대응팀을 구성하고 각 역할을 분담한다.
- 구성 시 유치원 내·외 전문가를 위기대응팀에 구성하고 재난대응 계획의 수립·실행·평가를 한다.
- 유치원장은 위기대응팀 구성원들이 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평소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유치원구성원들의 대규모 사망사고 등 재난사고 발생 후 신체적·정신적 징후에 대한 연수나 홍보를 실시하여 발생 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유아들이 재난 위기 발생 시 정신적·심리적 자기 건강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교육을 계획·실시한다.

### 2) 사후 조치사항

- 유치원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1차 위기 대응 관계자(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 회의 장소는 유치원으로 하며, 사건에 대한 공지와 학부모 공지 수준, 이후 진행될 위기 대응 일정 조율, 시간 계획과 각 담당별 업무 분담에 대해 논의한다.
- 확인된 사실만을 교사 → 유아 → 학부모 → (필요한 경우) 언론의 순서로 공지한다.
- 공지하는 범위는 유가족과 사전 협의를 하며, 유아에게 공지할 경우 담임이 반별로 공지하는 것을 권장한다(전체 방송 안내 지양).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을 서면과 휴대전화 문자를함께 이용한다(서면 안내문이 유실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방법 고려).
- 언론 공지는 반드시 교감으로 일원화하여 공지한다.
- 유아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슬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리검사나 교직원과 전문가의 관찰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 심리지원을 한다.
- 유치원 내에 위기 심리 지원을 설시 할 수 있는 공간(휴게실 및 상담실)을 마련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
- 심리적 위기 유아 및 교직원, 학부모 등 추후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부 록



# 붙임 #1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구 분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계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두부 손상	의식장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심혈관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 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 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광범위한 화성 (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대외과계 발성 골절, 대퇴부 척추의 골절, 혈관손상, 대발성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화상, 급성복통을 포함하는 전반적 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 골, 그밖에 응급을 요하는 증상, 배 뇨장애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 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등
안과계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안통, 눈 출혈 등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피부에 나타난 이상반응
정신과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소아과계	소아 경련성 장애	소아경련, 38℃이상의 소아고열
이물질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가 필요한 경우

<sup>※</sup> 이외의 심한 치통, 치아손상 등 신속을 요하는 경우

<sup>※「</sup>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관련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재구성

# 붙임 #2 상황별 처치방법

### □ 일반생활 응급처치

O 코의 상처 (코피, 비출혈)

두탁한 물건 등에 의해 코에 충격을 받거나 고혈압, 고도의 변화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

#### 처치

- 1)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 혈액을 삼키거나 기도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 2) 코뼈 바로 아래 부분을 5~10분간 눌러준다.
- 3) 콧등을 얼음주머니 등으로 대어주거나 코 아래 윗입술 바로 위를 압박한다.
- 4) 출혈이 멈추었더라도 바로 코를 풀지 않도록 한다.

#### 코피 주의사항

피(비출혈)가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코뼈가 부러진 것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O 입의 상처

입의 상처는 피와 흔들리는 치아로 인해 기도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치료할 때는 환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응급처치

- 1) 머리, 목, 척추 부상이 없으면 머리를 전방으로 숙이고 앉아 있게 한다.
- 2) 머리, 목, 척추 부상이 있으면 회복자세를 취해준다.
- 3) 입술 관통상 일 경우, 입술과 잇몸 사이에 둥근 드레싱을 대어주며, 입술과 혀에 차가운 것을 대어준다.

#### O 치아 빠짐 (유실)

치아가 빠졌을 때, 신속한 지혈과 치아를 재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응급처치

- 1) 치아의 유실 시간을 파악한다.
- 2) 유실된 치아를 입안에 넣어 병원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어린아이의 경우 삼킬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 3) 가장 좋은 방법은 유실된 치아를 우유에 넣어서 보존하는 방법이다. 만약 우유가 없다면 깨끗한 물에 넣어 보존한다.
  - ♥ 유실된 치아를 우유에 보존하는 이유우유는 구하기 쉽고 멸균이 되어있고 세포가 죽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농도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 4) 가능한 1시간 이내에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 5) 유실된 치아의 뿌리 부분은 절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 치아유실 후 빠른 병원 방문의 중요성

치아가 빠진 후 15분 내에 다시 심었을 때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빠진 치아가 공기 내에서 30분 이상 노출되면 치아를 재이식해도 대부분 뿌리가 흡수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즉, 치아의 유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

#### O 귓속의 이물

귓속에 파리 또는 벌레가 들어간 경우 불빛으로 유도해 밖으로 빼낸다. 이물을 바늘이나 철사 같은 것으로 빼낼 경우 귀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 7.응급처치, p.129~130]

# □ 드레싱

O 드레싱의 용도

감염방지, 출혈방지, 분비물 흡수

#### O 드레싱의 종류

- 1) 거즈 작은 상처에 사용되며 크기별로 나뉘어서 멸균 포장되어 있다. 일부 거즈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상처에 달라붙지 않으므로 특히 화상부위나 분비물이 있는 상처에 유용하다.
- 2) 접착 드레싱 혈액이나 액체가 응고 되었을 때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일회용 밴드처럼 생긴 것은 무균 드레싱과 붕대를 혼합한 형태로 작은 베인 상처나, 긁힌 상처에 유용하다.
- 3) 외상용 드레싱 크기가 크고 두껍고 흡수성이 있는 소재로 소독이 되어 있으며 주로 출혈이 심한 베인 상처나 벗겨진 상처에 유용하다.

#### O 드레싱 할 때 주의할 점

- 1) 솜뭉치나 뭉친 약솜을 드레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2) 출혈이 멈출 때까지 젖은 드레싱을 떼지 않는다. 피가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드레싱을 덧대다.
- 3) 상처에 달라붙은 드레싱을 억지로 떼어 내지 않는다. 만일 떼어 내야 한다면 따뜻한 물로 적신 후 조심스럽게 떼어 낸다.

# □ 붕대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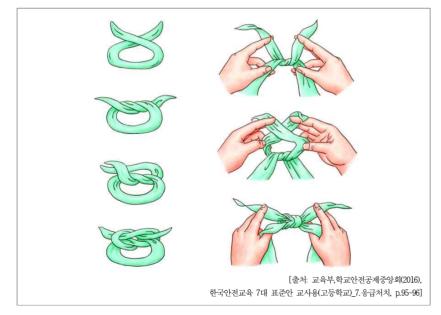
## O 붕대의 용도

- 1) 드레싱이 상처에 붙어 있게 고정
- 2) 부목의 고정
- 3) 압박을 통한 지혈
- 4) 감염 등으로부터 보호
- 5) 부기(浮氣) 예방

# O 붕대의 종류

- 1) 탄력 롤 붕대 : 염좌 등 압박 및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 2) 사두붕대 : 양 끝을 잘라 귀가 네 개 있는 모양. 돌출된 부위에 유용하다.
- 3) 삼각건 : 반창고가 없어도 드레싱을 고정시킬 수 있으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 O 삼각건 매듭법



- 41 -

# O 삼각건을 사용하여 상처 응급처치하기

## 머리

- 머리에 댄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특
- 히 머리에 넓게 상처를 입었을 때 사용한다.
- 1) 삼각건의 밑변 부위를 폭이 약 5cm 정도 되도록 접는다.
- 2) 접은 부분의 중심이 이마 중앙의 눈썹 위에 오게 하다.
- 3) 삼각건의 양끝을 머리 뒤로 돌려 감고 교차하여 다시 앞으로 오게 하여 이마 중앙에서 묶는다.



# 어깨

- 어깨나 상완(위팔)에 댄 넓은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두개의 삼각건을 사용할 경우에 는 그 중의 한 개는 좁게 접는다.
- 1) 펴 놓은 삼각건 꼭짓점 부근에 세 번 접은 다른 삼각건을 놓고 밑변이 평행하도록 하여 2~3번 접는다.
- 2) 넓은 삼각건으로 상처를 덮고 접은 삼각건의 양 끝을 부상당하지 않은 쪽의 겨드랑이 바로 앞에서 묶는다.
- 3) 부상당한 어깨 쪽 삼간건의 양끝을 겨드랑이 밑으로 돌렸다가 다시 상완부에 돌려서 단단히 묶는다.



#### 팤꿒치

팔꿈치의 상처에 댄 드레싱을 고정시키고 팔꿈치의 운동도 가능케 한다. 팔꿈치를 ㄱ자로 구부린 자세 로 삼각건을 감는다.

- 1) 삼각건의 넓이를 7~10cm로 만든 후 드레싱 위를 중심으로 놓고 감기 시작한다.
- 2) 한번 돌려 감은 후, 한 쪽은 팔꿈치 위쪽으로 돌려 감아 주고 다른 한 쪽은 아래쪽으로 돌려 감아준다.
- 3) 삼각건의 양 쪽 끝이 팔꿈치 관절의 바깥쪽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나게 한 후 묶어준다.

- 42 -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92]

42 |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유치원계획 부록 41

# □ 탈구

O 정의

뼈가 정상위치를 이탈했거나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O 증상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의 모양이 변하고 붓는다.

- O 응급처치
- 1) 비상시가 아니면 비의료인이 탈구를 바로 잡으려 하면 안 된다.
- 2) 부상부위를 편하게 하고, 냉찜질을 하여 통증과 부기(浮氣)를 가라앉힌다.
- 3)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를 병행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증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 염좌

O 정의

인대 등 관절조직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파열된 상태를 말한다.

O 원인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정상운동 범위를 심하게 벗어날 경우 주로 발생한다.

- O 증상
- 1) 손상과 동시에 부어오르기 시작하며 통증을 유발한다. 부상부위를 움직일 경우 통증이 심해진다.
- 2) 부상부위의 피부색이 곧바로 변하지는 않지만, 변색될 경우 장기간 지속된다.
- O 응급처치
- 1) 부상부위가 손목일 경우 팔걸이를 하여 고정시키고, 발목일 경우 환자를 눕히고 부목, 삼 각건 등을 활용하여 고정시킨 후 부상부위를 높여준다.
- 2)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 상처 부위를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다.

- 3) 염좌가 심하다면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다.
- 4) 발목 염좌가 있는데 혼자 걸어야 한다면, 신발을 신은 채로 신바닥 굽 바로 앞에 접은 붕대의 중간 을 대고(신발은 벗은 상태라면 발등위에 접은 붕대의 중간을 대고 발바닥을 한 번 감은 뒤) 양끝을 발뒤꿈치 위(뒤)에서 교차시킨 후 다시 발목 앞으로 돌려 교차시켜 양끝을 발뒤꿈치의 양쪽을 지나간 붕대 밑으로 넣어 걸어서 다시 발등에서 묶는다.
- 5) 발목 염좌는 되도록 걷지 말고 신속하게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 근육염좌

O 정의

근육이나 건 섬유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거나 찢어진 것

O 원인

근육을 심하게 사용하거나 갑작스런 움직임이 있을 때 발생

O 증상

관절사이의 통증, 부종, 기형이 발생한다.

O 응급처치

염좌의 처치내용과 같이 부상부위를 안정시키고, 냉찜질을 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 근골격의 손상 시 일반적인 응급처치

- O 뼈의 골절이 의심되는 때의 응급처치
- 1)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절된 화자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 2) 환자를 함부로 옮기거나, 다친 곳을 건드려 부러진 뼈끝으로 골절을 악화시키게 해서는 맛된다.
- 3) 굽은 곳을 바로 펴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돌출된 뼈를 안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
- 4) 골절이나 탈구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곳은 전부 부목을 댄 후 즉시 병원으로 후 송한다.
- 5) 출혈이 심하면 지혈을 한 후 부목으로 고정하여 병원으로 후송한다.
- O 탈구(관절이 빠졌을 때) 시 응급처치

베게나 쿠션을 사용 부상자를 가장 편한 자세로 유지해 주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O 염좌(근막 또는 인대 손상 등) 시 응급처치
- 1) 관절 주위의 인대나 조직의 손상으로 흔히'삐었다'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 2) 부상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관절을 지탱해 주고 손상된 부분을 높게 해준다.
- 3) 찬 얼음으로 부은 것과 통증을 감소시켜 주면 효과적이다.
- 4) 골절과 같은 처치로 부목을 대준다.

#### O 부목사용의 목적

- 1) 부러진 뼈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폐쇄골절이 개방골절로 되는 것을 예방한다.
- 2) 신경, 근육과 혈관 손상을 최소화한다. 즉, 부러진 뼈끝이 주위 조직을 건드려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한다.
- 3) 동통을 경감한다.

발목 발등골절	염좌	하퇴골(정강이와종아리)골절

## O RICE(Rest-Icing-Compression-Elevation)

#### 휴식(Rest)

- 1) 통증이 유발되는 움직임과 운동은 피하게 하고,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 2) 머리, 목 손상 의심 시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힌다.

## 얼음찜질(Icing)

- 1) 손상부위에 거즈나 의복을 대어 피부손상을 예방한 후 얼음 등을 이용해 차갑게 해준다. 얼음찜질은 부기(浮氣)와 통증, 불편함을 감소시킨다.
- 2) 얼음은 별도의 얼음주머니를 활용하거나 없을 경우 수건이나 옷에 싼 후 이용한다. 단, 개방성 골절에는 얼음찜질을 하지 않는다.
- 3) 손상부위에 10분간 냉찜질을 한 후 손상부위를 확인했을 때 심하게 차갑다고 느낀다거나 빨갛게 된다면 냉찜질을 중단한다.

### 압박(고정)(Compression)

- 1)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면 얼음찜질을 하거나 높여 주기 전에 부목 등으로 손상부위를 고정한다.
- 2) 압박(고정)의 목적
  - 통증 감소
  - 주변의 연한 신체조직 손상방지
  - 심각한 출혈의 위험성 감소
  - 손상 부위의 혈액순환 개선
  - 폐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로 악화될 가능성 예방

#### 올리기(손상 부위 높임)(Elevation)

- 1)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혈류량을 감소시켜 부기(浮氣)를 줄여준다.
- 2)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는 부목을 대고 높여 준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O 손상부위에 부목을 사용 시 고려할 점
- 1) 가능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상부위를 지지하면서 부착한다.
- 2) 개방골절은 출혈, 감염방지를 위해 골절부위를 지지하고 붕대를 감아준다.
- 3) 단단한 부목사용 시 부드러운 천 등을 감싸주면 좋다.
- 4) 부목사용 시 부목과 신체 사이의 빈 공간에 고임(삼각건, 천 등을 활용)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
- 5) 부목은 삼각건, 붕대, 옷 등을 이용해 잘 고정한다.
- 6) 손가락, 발가락 끝을 자주 확인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확인하며, 부목을 댄 아래쪽 이 저린다거나, 손·발가락의 피부색이 변할 경우 부목을 잠시 풀어준다. (30분마다 한 번 씩 혈액순환 확인)
- 7) 가능하면 부목을 댄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충격처치를 병행한다.

## □ 화상

## O 화상의 정의

과도한 열, 화학물질, 전기, 태양열, 방사능 등에 의해 피부조직에 손상이 유발되는 것→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지게 되면 감염이 유발될 수도 있고, 신체로부터 나오는 체액 손실이 발생할수 있으며 신체의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다.

## O 화상의 원인(연령별)

- 1) 3세 이하의 소아 가정에서 끓는 물
- 2) 3~14세 불장난 등으로 인한 화염 또는 그을림
- 3) 15세 이상 작업상의 사고

## O 화상 응급처치

## 화상처치의 4가지 기본단계

- 1) 화상부위를 냉각시킨다.
- 2) 감염예방을 위해 화상부위에 드레싱을 해준다.
- 3) 쇼크 응급처치를 병행해 준다.
- 4) 의료적 도움의 필요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 O 학교에서의 화상 상황

- 1) 핫팩 : 저온 화상
- 2) 주전자(포트) : 컵이나 종이컵에 물을 붓다가 화상
- 3) 컵라면 : 컵라면에 물을 붓다가 화상을 입거나 컵라면 용기를 들고 이동 중 물을 쏟아 화상을 입음

#### O 화상의 종류와 증상

1도 화상 (표재성/홍반성 화상, Superficial Burns)	<ul> <li>피부의 외피층만 손상된 것으로 대부분 일광에 의해 발생한다</li> <li>증상 : 피부가 빨갛게 되고,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다</li> <li>치료하면 대부분 특별한 흉터 없이 5~6일 안에 완치된다</li> </ul>
2도 화상 (부분층/수포성 화상, Partial-Thickness Burns)	<ul> <li>피부의 외피와 표피, 진피까지 손상된 화상이다</li> <li>증상: 물집, 심한 통증, 흉터나 피부변색(붉어짐), 탈모 등이 생긴다</li> <li>치료해도 흉터가 생길 수 있으며, 보통 3~4주 안에 완치된다</li> </ul>
3도 화상 (전층/괴사성 화상, Full-Thickness Burns)	<ul> <li>피부의 전층, 피하지방, 근육, 뼈, 혈관, 신경 등 하층 구조까지 손상된 화상</li> <li>증상 : 상처부위가 갈색 또는 거무스름하고, 아래에 있는 조직은 새하얗게 되고, 통증이 심하거나 신경의 끝부분이 파괴되어 통증이 없을 수 있다</li> <li>치료해도 대부분 흉터가 남으며, 광범위한 3도 화상은 사망할 수도 있다</li> </ul>

## O 화상 발생 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1) 된장, 간장, 기름, 약 등을 바르지 말 것(세균 감염 우려)
- 2) 물집을 터트리지 말 것(세균 감염 우려)
- 3) 눈 화상 경우 문지르지 말 것(각막 손상으로 실명 우려)
- 4)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 것(피부손상, 세균 감염)
- 5) 피부가 부어오르기 전 시계, 반지 등 귀금속 제거할 것

출처: 응급처처법(대한적십자사)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11~112]

# □ 열성질환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일사병)
정의	• 고온에서 과도한 활동 후 체내 수분과 염분 소실로 일어나는 질환	• 땀을 과다하게 흘려 체내 수분이 떨어짐과 동시에 피부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질환	• 고온의 태양열 등에 의해 뇌의 체온중추기능이 마비되어 일어나는 질환
원인	• 고온의 환경에서 강도 높은 운동과 노동을 할 때	•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	•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경우
증상	근육 경련 (다리와 복부에 많음)     따뜻하고 습한 피부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높음     많은 양의 땀 분비	<ul> <li>두통, 현기증, 메스꺼움</li> <li>차갑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li> <li>체온은 정상</li> <li>빠르고 약한 맥박</li> <li>심한 발한</li> </ul>	체온상승     건조하고 따뜻한 피부     의식을 점차 잃음     초기에는 강하고 빠른 맥박, 점차 느리고 약해점     초기의 깊은 호흡에서 점차 얕은 호흡
응급 처치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진하지 않은 소금물, 스포츠 음료를 줌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마사지 함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옷을 느슨히 함     적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냄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물을 섭취     눕힌 상태에서 다리를 높여줌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옷을 느슨히 함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냄     가능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음     환자의 머리, 어깨를 약간 높임

# O 열경련(Heat Cramps)

#### 정의

고온상태에서 과도한 신체활동 후 체내 수분, 염분의 손실에 의해 근경련이 유발되는 상태 워이

심한 발한으로 인해 급격하게 신체 내 수분과 염분을 잃을 경우 발생된다.

#### 증상

다리와 복부에 통증을 동반한 근수축, 체온은 정상, 축축한 피부

#### 응급처치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물 또는 스포츠 음료를 주면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수축된 근육을 마사지한다.

# O 열탈진(Heat Exhaustion), 열성피로(Heat Fatigue)

#### 정의

고온상태에서 체내 수분과 염분의 과도한 손실로 혈류량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임상증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 원인 및 특징

극심한 고온에서 장시간 운동을 하거나 심한 노동으로 수분 손실이 진행되어 혈류량이 감소하지만 피부나 말초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며 생존에 필요한 장기로 가는 혈류는 감소한다.

#### 증싱

낮거나 정상적인 체온, 차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두통, 탈진, 메스꺼움, 현기증과 허약/ 무력감, 빠르고 약한 맥박 등

#### 응급처치

- 1)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다
- 2) 옷을 느슨하게 해준다
- 3) 젖은 수건으로 열을 증발시킨다
- 4) 의식이 있으면 적은 양의 시원한 음료를 준다

#### O 열사병(Heat Stroke)

#### 정의

고온에 의해 체온조절 중추의 기능이 마비되어 주요장기 손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원인 및 특징

고온에 의한 체온조절 중추기능의 마비

#### 증상

높은 체온, 붉고 건조한 피부, 의식 소실, 약하고 빠른 맥박, 얕고 빠른 호흡 등

#### 응급처치

119에 도움을 요청하며, 그 외의 처치법은 열탈진의 처치와 동일하다.

### □ 동상 및 저체온증

O 동상의 정의

신체의 일부가 언 상태를 말한다.

O 동상의 원인

추위에 신체부위가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기온, 노출시간, 바람 등이 주요 유발 요인이다.

- O 동상의 종류
- 1) 표재성 동상 : 피부는 손상 되었으나 피부 아래 깊은 조직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다.
- 1) 심부 동상 : 피부와 피부 아래 깊은 조직까지 침범한 동상이며 심하면 신체부위를 잃을 수 있다.
- O 동상의 증상

동상 부위의 감각 소실, 끈적끈적하고 차가운 피부, 변색된 피부색

- O 동상 응급처치법
- 1)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한다는 이유로 문지르지 않는다.
- 2) 동상 부위를 37~40도 정도의 물에 피부색이 정상이 될 때까지 담근다. 온도계가 없는 경우 손을 넣어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물이면 된다.
- 3) 동상 부위는 건조한 무균 붕대로 감고, 손·발가락 사이사이에는 멸균된 솜이나 거즈를 넣고 감는다.
- 4) 물집은 터뜨리지 않고, 신속하게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 □ 벌에 쏘였을 때

Ο 정의

벌의 몸통 부분에 있는 침에 의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 라에 보고되는 중독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O 원인

벌통을 건드린 경우, 요란한 색의 옷을 착용한 경우 등이 있다.

## 0 증상

보통은 쏘인 자리가 아프고 붓는 정도지만 벌독에 의한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부 두드러기, 저혈압, 의식불명, 천식발작, 호흡곤란, 복통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O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벌독 알르레기를 유발하는 벌

꿀벌, 말벌, 땅벌 등

O 벌에 쏘인 경우 응급처치

핀셋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하며, 벌침 제거 후 냉찜질을 한다. (벌침을 제거할 때에는 독낭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O 벌독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과 의식장에 발생 시 누운 자세를 유지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충분히 확보한 자세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O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 1)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 화장품, 요란한 색의 옷을 피한다.
- 2) 벌이 가까이 접근하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낮은 자세를 취한다.
- 3) 옥외에서 언제나 양말, 운동화를 착용하고, 몸에 맞는 옷을 입지만 원색의 옷은 피하다.
- 독충에 물렸을 때 가장 위험한 경우를 말하며 독충에 의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전신적인 과민반응 두통, 어지럼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경련, 의식저하 등의 쇼크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위험하다.
- 과민성 쇼크의 경우 급속히 진행되며 1~2시간 이내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의 60~80%는 기도가 부어 질식하는 것으로 보고됨.
- 응급처치 쇼크 응급처치를 실시하되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예방 평소에 알레르기나 특정물질에 과민반응이 있으면 주변에 알린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 7.응급처치, p.127~128]

# 붙임 #3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 심폐소생술

#### 1. 현장 안전과 반응 확인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구조자는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감염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을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확인하는 동안에 쓰러져 있는 환자의 머리나 목의 외상이 의심되면 손상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이때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한다. 반응이 있고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면 119에 연락을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지시를 따른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2. 응급의료체계 신고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쓰러진 사람이 심장정지 상태라고 판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혹은 원내 심장정지 코드 방송)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 3. 호흡 확인

호흡은 119 신고를 먼저 한 이후에 환자의 호흡을 확인해야 한다. 호흡 확인 과정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심장정지 호흡이 있는 경우 심장정지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가슴압박의 시작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인은 반응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여부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호흡이 없 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4. 가슴압박

가슴압박은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 정중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한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서 겹친 뒤 깍지를 낀 자세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성인 심장정지의 경우 압박 깊이는 약 5cm, 가슴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120회를 유지한다.

또한, 가슴압박 이후 다음 가슴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가슴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을 최대로 할 것을 제안한다. 가슴압박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슴압박이 중단되는 기간과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성인 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심폐소생술 시작  $1.5\sim3$ 분 사이부터 가슴압박의 깊이가 얕아지므로 2분마다 가슴압박을 교대해 주는 것이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인 가슴 압박법]



[소아 가슴 압박법]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5. 기도유지 및 인공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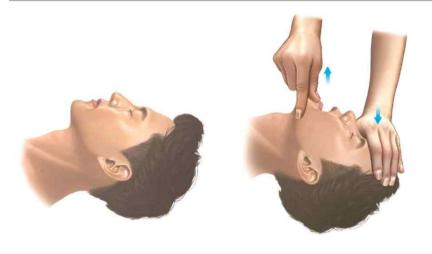
## 1) 기도유지 방법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구조자는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head tilt-chin lift)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한다. 이 방법은 한 손을 심장정지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로기울이는 것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호흡을 준비한다.

## 2) 인공호흡 방법

인공호흡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한다.
- ②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일회 호흡량으로 호흡한다.
- ③ 가슴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④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 자동제세동기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 기도폐쇄(하임리히법)

순서	처치 방법
1	환자에게 "목에 뭐가 걸렸나요?"라고 묻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기도 폐쇄이므로 즉각 처 치 시행
2	환자가 기침을 크게 한다면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u>스스로 기침을 못하는 성인이</u> 나 1세 이상의 소아 환자라면 즉시 등 두드리기 시행
3	등 두드리기 5회 연속 시행 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 법) 시행
4	기도폐쇄 징후가 해소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계속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 5회씩 반복







등 두드리기

복부 밀어내기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 골절

- O 골절의 형태별 분류
- 1) 분쇄골절 골격이 손상되어 두 개 이상의 골절 파편으로 나누어진 경우 (자동차 사고 등에 많음)
- 2) 나선골절 골절이 뼈 둘레를 돌면서 골절된 형태(스키사고 등에 많음)
- 3) 사선골절 뼈의 축에서 사선으로 골절된 형태 (뼈에 약간 또는 중간 정도의 압력이 가해진 경우)
- O 골절의 원인별 분류

- 1) 외상성 골절 일반적인 골절, 정상적인 뼈가 외력으로 인해 발생
- 2) 특발성 골절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특정부위의 뼈가 약해져 외력 없이도 근수축에 의해 이상골절이 발생된 상태. 병적 골절이라고도 함
- 3) 피로성 골절 일정 외력이 장기간 반복되어 뼈에 누적되면 피로현상으로 변질되는 현상

#### O 신체 부위별 골절처치

# 1) 빗장뼈(쇄골) 골절

#### 증상

- 일반적인 골절 증상이 나타난다.
- 대부분 부러진 부분이 만져진다.
- 팔읔 어깨위로 들지 못한다.
- 부상당한 어깨가 반대편보다 쳐진다.

#### 응급처치

- 부상당한 쪽의 손을 팔꿈치 보다 높게 하여 반대쪽 어깨에 되고 삼각건을 댄다.

## 2) 위팔뼈(상완골) 골절

#### 증상

- 골절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 어깨관절의 운동을 할 수 없다.

#### 응급처치

- 팔꿈치를 'ㄴ자'로 구부린 후 어깨부터 팔꿈치 길이의 부목을 댄다.
- 삼각건을 부러진 뼈 위쪽과 아래쪽에 하나씩 묶는다.
- 삼각건으로 팔걸이를 만든다.
- 삼각건으로 팔 전체를 고정한다.
- 부목이 없을 시 붕대로 팔 전체를 가슴에 대고 감는다.

#### 3) 팔꿈치뼈(주관절) 골절

#### 증상

- 관절부위가 붓고 팔을 구부릴 수 없다.

#### 응급처치

- 겨드랑이부터 손가락까지 부목을 댄다.
- 팔꿈치가 구부러져 있으면 팔을 무리하지 않게 끌어올리고 팔을 몸체에 대고 삼각건을 고정시킨다. 팔과 몸을 고정할 때는 골절부위를 건드리거나 힘이 가해 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 구부러진 팔을 무리하게 펴지 않는다.
- 이송 시 삼각건으로 허리를 묶어 고정한다.

#### 4) 아래팤뼈(전완골) 골절

#### 증상

- 아래팔 뼈 두 개가 모두 부러질 경우 골절의 일반적 증상이 나타난다. (아래팔 뼈 전완의 뼈 한 개 또는 두 개가 부러질 수 있다)
- 한 개만 부러졌거나 손목 뼈마디가 부러졌을 때는 부상 부위를 움직이기 어렵다.

#### 응급처치

-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한다.
-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길이의 부목을 손바닥 쪽에 댄다.
- 두 개의 삼각건을 골절부위 위쪽부터 맨다.
- 손바닥이 가슴 쪽을 향하도록 하고, 팔꿈치 보다 약 10cm정도 높게 한 후 삼각건으로 고정시킨다.

쇄골(빗장뼈) 골절	주관절(팔꿈치골절)	전박골(아래팔뼈골절)

출처: 용급처치법(대한적십자사)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용급처치, p.106~108]

# □ 전기화상

#### O 특징

- 1) 화상의 크기가 작아도 신체 내부의 심한 손상이 동반되며, 특히 심장은 전기에너지에 의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 2) 전기가 신체에 접촉하면 전기가 신체내부로 유입되고 다른 부위로 나오게 되는데 전기가 들어가고 나온 곳에 화상을 입고 전기가 나오는 곳의 상처가 깊고 크다.
- O 전기에 의한 화상 응급처치 방법
- 1) 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의 모든 전원을 차단 후, 접근해야 한다.
- 2) 필요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쇼크, 화상, 골절 처치 등을 실시한다.
- 3) 처치 119를 통해 화상전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전문치료를 받도록 한다.

### □ 저체온증

## O 저체온증의 정의

내·외부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 O 저체온증의 원인

찬물 속에 오래 있거나 젖은 의복을 장시간 입고 있을 때, 난방시설이 없는 곳에 장시간 체류 등 장시간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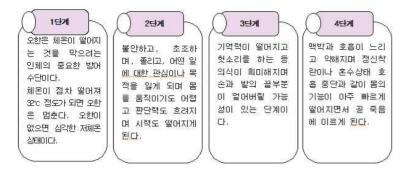
# O 저체온증의 증상

- 1)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다.
- 2) 체온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박동하며 심하면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 3) 온몸을 떤다.(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떨림은 없어진다.)
- 4) 몸이 저리다.
- 5)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 6) 무감각해지고 의식상태가 희미해진다.

#### O 저체온증의 응급처치법

- 1) 신속히 환자상태를 파악하여 치명적인 상태(호흡정지, 심장마비) 유무를 확인한다.
- 2) 필요 시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 3) 젖은 의복은 벗기고 환자의 몸을 건조하게 유지한다.
- 4) 따뜻한 장소로 옮겨 몸을 따뜻하게 한다. 단. 갑자기 체온을 높이지 않는다.
- 5) 저체온증 환자가 의식이 잃을 경우 필요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구조대원을 기다린다.

### O 저체온증의 단계



#### O 저체온증의 온도볔 변화



#### 저체온증 환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갑작스럽게 체온을 변화시켜 환자의 떨림 증상을 억지로 중지시키려 하지 않는다
- 32°C 이하의 저체온 환자에게 뜨거운 물병이나 핫팩 등으로 급속 가온치료를 하지 않는다. 급속가 온은 말초의 차가운 혈액을 순환시켜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0~122]

#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일반 문의:성폭력방지과 02-2100-6429, 6392) (사건대응 문의:성폭력방지과 02-2100-6168, 6169) (교육 관련 문의: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5)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금모래초등학 교境설유치원장이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과 소속 구성원(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원생을 포함)에게 적용되며,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 제3조(성폭력의 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2차 피해'란 동 표준안 제12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 책무)

- ①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장은 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 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 3. 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마련
- 4.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5. 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 홍보
- 7. 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 ②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고충상담창구)

-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폭력 피해 상담.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 2.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 3.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4.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성폭력 고충 처리 점차에 관한 사항
-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폭력 예방 업무
-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00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및 처리대장, 성폭력 고충처리 절차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①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고충상담원의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 ③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하다
- ④ 규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⑤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 제7조(예방교육)

- ①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매년 연초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 2.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 4.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기타 성폭력 예방에 과하 사항 등
-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학제1호)
- ④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원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8조(고충상담)

#### 제8조(고충상담)

- ①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통보 의무)

제9조(통보 의무)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건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제10조(조사)

#### 제10조(조사)

- ① 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성 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 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⑦ 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 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했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직업능력 개발 및 항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 ③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다.

####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 ⑥ 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4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이 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밤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4 그 밖에 성폭력의 재박 방지에 과하 사항
-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 제15조 (조사 등 결과 통지)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 야 한다.

#### 제16조(징계)

#### 제16조(징계)

- ①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정계한다.
- ④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조사 중인 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 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 ①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③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금모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